

(사건의 대강의 전개)

1) 21년 11월 7일 아버지 사망

상속인으로서 재혼한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아들이 있고 본처 소생의 두 딸(직업은 가수이며 미혼인 동생과 미시민권자로 미국거주 중인 언니)과 20년전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아들의 처(및 두 딸)인 올케가 있음.

2) 21년 11월 11일

평소에 가난을 호소하던 동생을 위해 미국의 언니가 상속을 양보한다고 함. 동생은 언니는 상속을 안받을 것이므로 미국에서 서류를 보내올 필요가 없다고 함

3) 21년 12월 2일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전후에 아버지의 예금을 전부 이체해 간 사실을 알게된 동생은 언니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하기로 계약함

4) 12월 7일

올케는 자신의 두딸과 상의후 대표로 재산을 받기로 하였으나 12월 7일 대수술을 하여 동생에게 모든걸 믿고 일임함

5) 12월 27일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다 갖고 있던 새어머니가 올케와 언니 동생 몫으로 현금 14억과 상가를 주겠다고 동생에게 약속함. 동생은 이날 언니에게 올케한테 10억을 주고 자신은 4억과 상가를 전부 갖겠다고 함. 상가의 시가를 정확히 모르던 언니는 동생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동조함.

6) 12월 28일

동생은 올케에게 상가가 시가 20억이라고 말하고 본인과 언니가 상가를 갖고 올케는 10억을 가지라고 함. 4억은 상가에 들어있는 보증금 및 기타비용이라며 실비를 4배로 부풀려 본인이 갖겠다고 함.

7) 12월 30일

동생은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아들을 만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새어머니와 함께 올케에게 10억을 보낸후 남은 재산은 모두 동생이 갖는 걸로 함. 이때 국적이 말소된 언니의 한국국적의 주민증과 인감을 사용함.

8) 12월 31일

변호사는 새어머니와 소송을 하기로 이미 착수금을 받았는데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협의가 되었으니 상가등기를 무료로 해준다고 함.

9) 1월 1일

동생과 언니, 다툼이 있었고 언니가 화나서 언니 지분을 돌려달라고 함.

동생은 12월 31일 이미 300만원 주고 법무사랑 상가등기를 다 마쳤으니 상황 종료라고 함. 이 말은 거짓이었음.

언니는 허락도 없이 안써도 되는 돈까지 주고 등기를 마쳤다는 동생이 너무 수상하여 누군가 동생을 조정하는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되어 너를 위해서라도 아빠의 재산을 지켜야 겠으니 다시 협의서를 쓰고 재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다시 바꿔놓으라고 함.

언니의 지분을 명의만 옮기는 것이니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은 동생이 다 쓰라고 함. 동생은 재등기에 협조하겠다며 순순히 알았다고 함.

10) 1월 3일

언니는 상가 지분 반을 재등기 해주는 조건으로 3인(올케, 언니, 동생) 공동 명의인 수지의 집을 동생에게 증여해 가라고 함. 대신 수지집을 담보 대출하여 언니가 낼 상속세를 빌려 달라고 함.

11) 1월 4일

동생은 언니에게 재협의서 다시쓰고 등기도 옮길듯이 협조하는 척 연기를 함. 그러나 이미 등기를 마쳤다고 거짓말을 했던 상가를 이날 비로소 본인 명의로 등기함.

그리고 올케에게는 상속세를 내야하니 수지집을 증여해 달라고 하고 증여서류를 받고 언니에게는 아무런 말없이 수지집 지분을 전부 본인 앞으로 증여해 감. 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추후 협의서에 상속세는 각자내야 한다는 말을 읽고 올케는 속은걸 앎. 이날밤 이후 동생 연락을 끊음. 카톡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읽지도 않음.

12) 1월 9일

언니는 변호사에게 44억이라 적힌 상가의 현시세에 관한 서류받음. 동생한테 받은 것이라고 함. 언니는 실제시세를 보고 깜짝 놀라 올케에게 전화해 상가의 가치가 실제 올케랑 분배했을 당시의 가치와 너무도 다르다며 동생한테 속았다고 함. 언니는 고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다가 동생이 외제차를 두대나 굴리며 고액의 출연료와 행사비를 받고 비싸서 섭외하기 힘든 연예인으로 잘산다는 말을 들음. 너도 동생의 연기에 속은것 같다고 함.

13) 1월 13일, 1월 15일

고소하겠다는 언니의 협박에 동생은 올케와 변호사를 찾아가 동태를 살핌

14) 1월 15일

언니는 새어머니에게 상가가 40억이 넘으며 곧 전철이 들어와 매년 8억씩 오른다는 얘기를 들음.  
동생도 알고 있다고 함.

같은 날 저녁 동생이 언니한테 전화하여 재협의를 절대로 못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15) 1월 16일

올케한테 언니의 수지집 지분도 동생이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언니가 동생한테 전화함. 언니가  
준다고 했으면서 왜 탄소리냐며 둘이서 할테면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화끊음.

이후 고모를 비롯해 누구의 전화도 카톡도 받지 않고 연락을 끊음.

증거자료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논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착수금이 있다면 착수금은 얼마인지
2. 인지대 송달료 이외에 기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인지대 송달료 기타 들어가는 예상비용은 얼마인지
3. 소송 중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4. 성공보수가 있다면 어떻게 받으실지, 성공보수를 상가가치의 3분의 2에 관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총 상가가치로 계산 하는지, 기준시세로 계산하는지 현시세로 계산하는지,
5. 상속받은 상가등기 이외에 무상 증여된 주택등기의 원인무효소송도 함께 소송이 가능한지, 만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소송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기타 등기를 무효화 하는 대신 돈으로 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지현 카톡 아이디는 88akjh, 이메일 [jeehyun69@gmail.com](mailto:jeehyun69@gmail.com)

미국 전화번호 1-516-439-5037

강소영 한국 전화번호 010-9947-9690

(강소영은 대습상속인이며 강지현의 조카입니다. 원고는 강소영의 어머니이나 어머니가 생계를  
위하여 바쁜 관계로 통화가 힘드니 강소영의 전화번호를 올립니다.)